2020년도 제7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20년도 제7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회의일시 : 2020. 11. 20(금) 16시

▢ 회의장소 : 신라스테이 서초 5층 미팅룸 삼사

▢ 심의결과

1. 규칙개정안건

안건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차기 위원회 심의	부결
2건	-	2건	-	-	-

2. 일반의결안건 · 보고안건

일반의결안건					보고안건	
안건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부 결	안건수	원안 접수
-	-	-	-	-	-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2020. 11. 20.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대참)
	숭실대학교	송경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법무법인 화우	류병채(불참)
	한국전력거래소	조강욱
	한국전력공사	박형덕(대참)
	한국동서발전	이승현(대참)
	GS EPS	이재덕

1626800504160628161 3
탄송희/20201125141936

【붙임】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기후 · 환경제약(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등)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7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0-7-1호
개최일시	2020년 11월 20일 16시
제 안 자	화력5사 공동제안
제안내용	□ 기후·환경제약에 따른 비상대기예비력 및 비상대기예비력기준단가 용어 정의, 비상대기예비력 기준단가 결정, 시장운영 및 계통운영 절차, 정산기준 등 신설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구역전기사업자 적용유예 반대의견 등(한국전력)이 있었으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여, 본 규칙개정 안건을 수정의결하기로 함

① 수정사유 : 비상대기예비력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정의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23. "비상대기예비력(Emergency Capacity Reserve, ECR)"이라 함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중단, 상한제약(이하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시간별로 별도로 입찰한 용량(kWh)을 말한다. 단, 기후·환경 제약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관련된 가동중단, 상한제약은 제외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23. "비상대기예비력(Emergency Capacity Reserve, ECR)"이라 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중단, 상한제약(이하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시간별로 별도로 입찰한 용량(kWh)을 말한다. ~~단, 기후·환경 제약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관련된 가동중단, 상한제약은 제외한다.~~

한송희/20201125141936

16268005041606281613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입찰운영절차	**[별표4] 입찰운영절차**
7.0 입찰서의 내용	7.0 입찰서의 내용
7.1 입찰서 유효한 거래일 날짜	7.1 입찰서 유효한 거래일 날짜
(중략)	(중략)
7.31.비상대기예비력 [신설 2020.11.00]	7.31.비상대기예비력 [신설 2020.11.00]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중단, 상한제약(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시간별로 별도로 입찰한 용량(MWh)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중단, 상한제약(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시간별로 별도로 입찰한 용량(MWh)을 말한다.

② 수정사유 : 시행일 명확화 및 구역전기사업자 적용 유예기간 미부여를 위한 부칙 수정

현 행	개 정 (안)
부 칙 (2020. 11. 00)	**부 칙 (2020. 11.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12.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기예비력 입찰 및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비상대기예비력 입찰 및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중략)	(중략)
③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용시기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상대기예비력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③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상대기예비력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20년 11월 2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한송희/20201125141936

16268005041606281613

안건명 :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7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0-7-2호
개최일시	2020년 11월 20일 16시
제 안 자	화력5사 공동제안
제안내용	□ 정산결과통지 이후 정산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제15.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 ($0<\pi\leq1$)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 추가 *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를 받는 판매사업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원자력, 석탄, 국내탄 및 일반 중앙급전발전기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구역전기사업자 적용유예 반대의견 등(한국전력)이 있었으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여, 본 규칙개정 안건을 수정의결하기로 함

① 수정사유 : 시행일 명확화 및 구역전기사업자 적용 유예기간 부여기간 수정을 위한 부칙 수정

현 행	개 정 (안)
부 칙 (2020. 11. 00)	부 칙 (2020. 11.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12.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0<\pi\leq1$)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2조(정산조정계수 연간 적용범위($0<\pi\leq1$) 내에서의 정산금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중략)	(중략)
②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용시기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②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적용시기 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발전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제외한다.

한송희/20201125141936
16268005041606281613

② 수정사유 : 오탈자수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3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별표 23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7.1 제15.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당해연도 4/4분기 중 재산정 된 정산조정계수(이하 "재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거나 '0' 이하이고, 당해연도 내 이전기간에 적용된 정산조정계수(이하 "기존계수")가 '1' 이하인 경우로써 정산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산할 수 있다.	7.1 제15.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기의 당해연도 4/4분기 중 재산정 된 정산조정계수(이하 "재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거나 '0' 이하이고, 당해연도 내 이전기간에 적용된 정산조정계수(이하 "기존계수")가 '1' 이하인 경우로서 정산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산할 수 있다.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20년 11월 2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한송희/20201125141936

16268005041606281613